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9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진선미·윤종군·임오경

이학영 • 한병도 • 남인순

한정애 · 김성회 · 강경숙

김영호 · 송재봉 · 임호선

이광희 · 김문수 · 장철민

정태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학생자치활동)"을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생 략)	제17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
	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